

CCTV 설치·운영 지침

2014. 8.



충남대학교병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지침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4. 8. 13일 일부 수정 보완을 통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3. 적용범위

「CCTV 설치목적 추가」

- 중환자의 치료, 관찰 (모니터링)

목 차

제1장 총 칙

1. 목적
2. 용어 정의
3. 적용범위
4.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제2장 CCTV 설치시 준수사항

5. 설치 · 운영제한
6. 운영책임자의 지정
7. 의견수렴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8. 수집의 제한
9. 처리의 제한
10. 화상정보의 열람 · 반출 기록유지
11.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12. 안내판 설치
1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4장 보 칙

14. 비밀유지의무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충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개인 화상정보 보호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원 : 환자, 보호자, 직원, 기타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
2. 설치장소 : 병원 실내외 모든 장소
3. 설치대수 : 322대
4. 촬영범위 : 카메라 설치 범위내
5. CCTV 설치목적
 - 가. 안전사고(도난·범죄)예방
 - 나. 증거확보
 - 다. 화재예방
 - 라. 시설안전
 - 마. 주차관리

바. 출입인원 확인

사. 중환자의 치료, 관찰 (모니터링)

4.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병원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화상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화상정보를 제1항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5. 설치·운영 제한

공개된 장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운영책임자의 지정

1.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2.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설치 및 유지보수 : 시설과 담당자

나.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 비상계획팀 방호(보안)담당자

7. 의견수렴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후 설치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8. 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처리의 제한

1. 병원의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병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단, <마 ~ 자>호는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제공시에만 적용

10. 화상정보의 열람·반출 기록유지

1. 화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병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CTV 열람 및 영상물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 CCTV 열람대장

- (1) 열람일시
- (2) 파일명/형태
- (3) 담당자
- (4) 목적/사유
- (5) 이용·제공받은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6) 이용 · 제공근거
- (7) 이용 · 제공형태
- (8)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9)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10)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나. 영상물 제공대장

- (1) 열람일시
- (2) 파일명/형태
- (3) 담당자
- (4) 목적/사유
- (5) 이용 · 제공받은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6) 이용 · 제공근거
- (7) 이용 · 제공형태
- (8)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9)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10)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1.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1. 통합관리되는 CCTV에 의하여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 권한을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영상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파일의 명칭, 파기일시, 파기담당자를 명확히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3. 병원은 화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 가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2. 안내판 설치

병원은 CCTV를 설치·운영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1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병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4장 보 칙

14.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별첨]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활용 예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등요구자	이용·제공근거	이용·제공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결과 처리자	등 및 일자	안전관 리요청 결과
1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2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3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4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5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6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7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